

# 서울디자인재단 『임원인사규정』 제정(안)

2019. 12. 18

문서번호	정책기획팀-2693	책임	정책기획 팀장	기획본부 장	대표이사		
결재일자	2019.12.19.	12/19 정은석	12/19 안재선	12/19 신윤재	전결12/19 최경란		
공개여부	공개	협 조				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(3106)호						

추진근거	-『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(직무정지)에 관한 인사규정 정비 촉구』"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-1480(2018. 4. 18.) -『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(직무정지) 인사규정 정비 결과 경영평가 반영 안내』 "공기업담당관-4897(2018. 4. 19.)" -『투자.출연기관 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결과』 "공기업담당관-5075(2018. 4. 24.)"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약내용	협약결과
	서울시 공기업담당관	규정 개정사항 사전보고 및 협의	안건 사전공유 완료
	서울시 디자인정책과		
사 업 비	해당없음		

# 서울디자인재단 (정책기획팀)

## 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옴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법 령 및 기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
	기 타 :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
	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관 계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관 련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---

# 서울디자인재단 『임원인사규정』제정(안)

---

## 1. 추진근거

---

### ■ 추진근거

- “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(직무정지)에 관한 인사규정 정비 촉구” 「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-1480(2018. 4. 18.)」
- “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(직무정지) 인사규정 정비 결과 경영평가 반영 안내” 「공기업담당관-4897(2018. 4. 19.)」
- “투자.출연기관 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결과” 「공기업담당관-4913(2018. 4. 19.)」

---

## 2. 주요골자

---

### ■ 추진사유

- 행정안전부 요청 내용(2018.4.18.)  
“임·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(직무정지)미정비 기관은 경영평가에서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니,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에 철저”
- 재단 임직원의 경우 정관상의 직위해제 규정은 있으나, 임원의 징계에 대한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 규정 제정 필요
- 공기업담당관에서 권고안으로 제시한 <임원인사규정 표준(안)>을 근거로 재단에 맞게 수정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### ■ 주요 제정 내용

- 1) 임원의 임면 :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의 임면, 직무상 의무 등을 구체화
- 2) 직무상의 의무 : 성실의무, 비밀엄수의 의무, 청렴의 의무, 품위유지의 의무,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, 손해배상책임, 교육 훈련
- 3) 보수 : 상근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
- 4) 문책 : 임원의 문책 종류, 효력, 절차 및 의결권의 제한 등과 관련한 근거 마련(별도의 규정이 부재하였던 임원의 문책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)

---

### 3. 후속조치 사항

---

- 시 행 : 이사회 의결 후, 서울시 및 소관 주무관청 승인 후 시행

[별지1] 임원인사규정 1부.

[첨부1]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(직무정지) 인사규정 정비 결과 경영  
평가 반영 안내 1부.

[첨부2] 투자.출연기관 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결과 1부. 끝.

# 임원인사규정

제정 2019.12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재단의 임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조례,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"임원"이라 함은 재단의 이사장,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. 대표이사는 상근임원이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·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임원으로 한다.

## 제 2 장 임 면

**제4조(임원의 임면 등)**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위 등(이하"비위행위"라 한다)을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(이하"수사기관등"이라 한다)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명권자는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정지 기간 중 임원의 급여를 감액 또는 감봉 할수 있다.

③ 제2항의 수사 또는 감사결과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즉시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임명권자는 제2항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은 필요에 따라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(이하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5조(의원면직의 제한)** 임원의 임면권자는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.

## 제 3 장 직무상 의무

**제6조(성실의무)** ① 임원은 법령과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,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임원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7조(비밀엄수의 의무)**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청렴의 의무)**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.

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,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.

**제9조(품위유지의 의무)**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10조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)** ① 상근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상근임원은 법령과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1조(손해배상책임)**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**제12조(교육훈련)** 상근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, 조직관리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보 수

**제13조(보수)**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상근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문 책

**제14조(문책)**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.

107 임원인사규정

1. 법령과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
2.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
3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실이 생겼을 때
4.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
**제15조(문책의 종류)**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, 정직,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.

**제16조(문책의 효력)** ① 당해 임기 중 정직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, 2회 이상 정직시 해임 할 수 있다.

② 경고 및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, 주의 3회시 경고 1회로, 경고 3회는 정직1회로 간주한다.

③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.

**제17조(문책의 절차)**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명권자가 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대상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**제18조(의결권의 제한)** 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은 재적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1. 취임 및 해임(직무정지 포함)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기타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2월 일부부터 시행한다.